[별지 제28호서식]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·인수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 계 자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></td><td>전 화 번 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 수 자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></td><td>전 화 번 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인 계·인 수 내 역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인계·인수연월일</td><td colspan="4">년 월 일</td></tr>
</table>

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·인수합니다.

년 월 일

인계자(직위) 전 회계책임자 ○○○ (인)

인수자(직위) 현 회계책임자 ○○○ (인)

입회자(직위) ○○○ (인)

주

1. 인계·인수서는 회계책임자를 변경한 때마다 3부를 작성하여 인계·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나머지 1부는 회계책임자가 변경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2. "인계·인수내역"란에는 재산, 정치자금의 사용잔액, 회계장부, 예금통장·신용카드, 후원회인·그 대표자 직인, 구입·지급품의서, 지출결의서,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및 정치자금영수증(원부포함)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으로 하되, 그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3. "입회자"란에는 선임권자가 서명·날인합니다.